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066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05.1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1.23

포머이

포머이쌀국수

정보공개서

(주)머이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머이코리아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 표 번 호	031-962-5992	팩스번호	
가맹사업운영부서	가맹사업팀	가맹부서전화번호	031-962-5992
주 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 3 로 16, 4 층 403 호(원흥동, KB 중앙타워)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5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9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0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7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9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1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3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35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민원참여’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머이코리아	포머이쌀국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3로 16, 4층 403호(원흥동, KB중앙타워)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11.29.	2024.12.06.	최호근,이혜진	031-962-5992	-
	법인등록번호	285011-0587151	사업자등록번호		482-87-03419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공동대표이사	최호근	포머이쌀국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3로 16, 4층 403호(원흥동, KB중앙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호근,이혜진	031-962-5992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공동대표이사	이혜진	포머이쌀국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3로 16, 4층 403호(원흥동, KB중앙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호근,이혜진	031-962-5992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오현수	포머이쌀국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3로 16, 4층 403호(원흥동, KB중앙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호근,이혜진	031-962-5992	-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박양서	포머이쌀국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3로 16, 4층 403호(원흥동, KB중앙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호근,이혜진	031-962-5992	-

☞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나 회사를 말합니다.

3.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최근 3 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포머이쌀국수 행신역본점	포머이쌀국수	2024.12.15.	경기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 번길 20, 1 층 105 호 (행신동, M-타워)	이혜진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영업표지)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포머이쌀국수	
상 호	포머이쌀국수 0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상표(서비스표)	포머이	출원번호 제4020230187050호
		출원 준비 중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	-	-	-	-	-
2022 년	-	-	-	-	-	-
2023 년	-	-	-	-	-	-

* 당사는 2024 년 12 월에 설립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비고
포머이쌀국수	2021 년		
	2022 년		
	2023 년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 명	현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사업기간	직 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혜진	공동대표이사	2023년~2024.12.	포머이쌀국수 대표	회사업무총괄
			2024.12.~ 현재	(주)머이코리아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최호근	공동대표이사	2023년~2024.12	포머이쌀국수 이사	영업총괄
			2024.12~ 현재	(주)머이코리아 대표이사	영업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준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	-	-

* 당사는 2024 년 12 월에 설립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포머이쌀국수]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포머이쌀국수]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출원일자	출원번호	출원인	등록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포머이	2023.10.17.	제4020230187050호		

- * 당사의 상표는 현재 출원 중이므로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포머이쌀국수]의 가맹사업 시작한 날 : 2024.12.15.

2. [포머이쌀국수]의 연혁

[포머이쌀국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포머이쌀국수 행신역본점	포머이쌀국수	이혜진	2024.05~2024.12.	경기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 번길 20, 1 층 105 호(행신동, M-타워)
(주)머이코리아		최호근 이혜진	2024.12.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 3 로 16, 4 층 403 호(원흥동, KB 중앙타워)

3.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 종	
포머이쌀국수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외국식	쌀국수

4.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포머이쌀국수]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포머이쌀국수]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말 [포머이쌀국수]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포머이쌀국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 말
2021 년	-	-	-	-	-	-
2022 년	-	-	-	-	-	-
2023 년	-	-	-	-	-	-

6. [포머이쌀국수] 외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포머이쌀국수]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지역	2023 년말 가맹점수	2023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 매출액						비 고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당사는 2023 년말 현재 가맹사업 시작 전이므로 해당 사실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8.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는 [포머이쌀국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다.

9. [포머이쌀국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포머이쌀국수]은 2023 년말 현재 가맹사업 시작 전이므로 해당 사항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광고 및 판촉비	인터넷 등	연중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 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화정역지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	031-968-8413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포머이쌀국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 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 치	확정 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4,300			
가맹비	11,000	계약체결 시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영업표지사용 대가, 가맹점 모집 비용 소요
교육비	3,300		교육 미 실시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 소요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총계	2,000		-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발생금액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합 계	16,300
가 맹 비	11,000
교 육 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4)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가 그 밖에 [포머이쌀국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면적 15 평(50m²) 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 설비	가맹본부	36,300	2,420	계약 체결시 개별 계약	설치전 계약취소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주방집기	가맹본부	19,800	1,320		물품 미공급시	
주방기자재	가맹본부	12,100	807			
홀용품	가맹본부	11,000	733			
POS 세트	협력업체	5,500	367			
합 계		84,700	5,647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개점하고자 하는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은 다르기에 **정확한 금액은 계약 체결 시 매장실측 후 안내**하고 있습니다.

②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추가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감리 대가로 귀하는 3.3 m²당 삼십삼만원(W330,000, VAT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외부 전기공사, 철거공사, 냉난방기, 덕트, **간판** 등의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 ④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조건에 따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⑤ POS 세트는 렌탈도 가능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포머이쌀국수]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주체	선 정 기 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장 크기는 실면적 50m²(15평) 이상을 권장합니다.
- ☞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귀하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개점 전 신규교육 이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 세 이상으로 보건증 소지자
종업원 (사용인)	가맹점 실제 운영자의 경우 점주 교육과정 수료, 그 외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으로 보건증 소지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당사는 가맹금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지급 대상자	금액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당사	월 매출액의 1.65% (VAT 포함)	익월 5 일	후불로 반환되지 않음
개점 이후 교육비	보수교육	당사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교육 시행 전	실비로 반환 안됨
	특별교육	당사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수시 교육	당사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판촉 분담비	판촉	당사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별도 공지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부담은 협의하여 결정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당사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별도 공지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POS 사용대가	지정 업체	월 사용료 3.3 만원(VAT 포함)	개별 청구	후불로 반환되지 않음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간판교체, 인테리어 (장비,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당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VII-1 참조
지연 이자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당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2024 년에 가맹사업을 시작 예정이므로 해당 사항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고
상품 및 재고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및 재고물품의 보관상태 등 점검	필요 시	감독항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필요 시	
접객 및 교육상태	직원 복장 및 고객응대 방법 점검	필요 시	

금전 및 회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회계조사	필요 시	
기 타	가맹본부의 운영지침 등 준수여부 점검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등(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전산 매출정보수집,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당사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게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당사와 [포머이쌀국수]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귀하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등의 사용도 중단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해지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철거하여야 하며, 운영매뉴얼 등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만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사를 표시하는 시설물 철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소요된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종료 이후에는 당사에 지급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지급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는 가맹점이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⑥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포머이쌀국수]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2024 년에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포머이쌀국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포머이쌀국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	--	--	--	--

당사는 2024 년에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해당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2) 당사는 [포머이쌀국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포머이쌀국수]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 · 용역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2]에 기재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상품은 가맹계약 체결시 상세 안내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당사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귀하가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2]와 같습니다.

당사가 권장가격을 변동하고자 할 경우 서면, 전자메일, 유선전화, POS 등을 이용하여 귀하에게 통보하겠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권장하는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쌀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업종	포머이쌀국수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기준으로 500m 범위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다만, 영업지역내에 있는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대형 할인점)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배타적인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만료전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80~90일 사이에 변경된 조건에 대한 통지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귀하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사는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포머이쌀국수] 영업표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포머이쌀국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10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기간

[포머이쌀국수]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또한 갱신 시에는 [2]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 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 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3년으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서 조문
○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포머이쌀국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 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일반해지 사유 및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당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일반 해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제34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다) 즉시해지 사유 및 절차

위의 일반해지와 달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4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가맹계약서 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음식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6조 제2항
○ 가맹사업의 통일화 및 활성화를 위해 영업방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2 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1.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2.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승인 여부 통지→ 양도인, 양수인, 당사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사업팀 문의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새로운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 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비고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와 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당사의 가맹계약 체결→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필수의무 교육 발생 시는 실비
대리행사	당사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당사 승인시 가능	-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1) 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포머이쌀국수]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머이쌀국수]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쌀국수를 취급하는 음식업종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포머이쌀국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1시 ~ 21시 30분	월 26일 이상

- ① 영업시간은 상권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2명 권장 (가맹점사업자를 포함))	가맹점사업자의 직접근무를 권장함

* 종업원수는 가맹점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감독 항목	관리 내용	빈도 및 시기	감독절차
매장 청결관리	주방 위생, 매장 청소 실태 등	수시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항목 점검 및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제품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여부, 원부재료 사용실태 등	수시	
고객서비스	고객응대 수준 종업원 교육, 복장 상태 등	수시	

회계관리	회계장부 관리 실태, 보고자료 일치여부 등	수시	
------	----------------------------	----	--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50% / 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가맹점부 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등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기획·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당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意的한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겠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해지직전 12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의 10%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15일 이상 남은 달은 1개월로 산정)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점일로부터 영업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개점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 27 조(물품의 조달과 관리) 제 1 항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별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 38 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기간 내 제 39 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제 35 조(계약의 종료와 조치) 제 3 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위반일로부터 1 일당 금삼십만원(₩3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5)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 고
합 계		50 일 내외	8~10 쪽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D-47~D-50	
1 차 상담	- 전화상담 또는 당사 방문 상담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D-50	
가맹계약 체결 및 계약금지급 (가맹금예치포함)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D-33~D-36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및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 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3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3 주	
가맹점 교육	- 점포 운영 전반 (점주 및 종업원)	2 주	
초도물품 입고	- 원부재료 및 비품 입고	1~2 일	
영업 개시	- 가맹점 오픈 및 영업 개시	D-day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당사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점포환경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최소 5 년으로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당사 요청 시	매출증대,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당사 부담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매출증대,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당사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당사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 평균 월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오픈 일로부터 1년 간	당사의 경영컨설팅 실시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최초교육 (필수교육)	메뉴별 제조방법, 가맹점 운영방법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1 일 전까지	필수교육
양수교육	상 동	상 동	양수확정 후 1 개월이내	필수교육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포머이쌀국수]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수시교육	가맹점 운영정책의 변경 가맹점 영업활성화 신메뉴 소개 등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요 시	필수교육
보수교육	메뉴별 제조방법, 가맹점 운영노하우 등	개별교육	가맹점사업자 요청일부터 14 일 이내	선택교육
특별교육	메뉴별 제조방법, 가맹점 운영노하우 등	개별교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협의	필수교육

* 보수교육은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가맹점 관리 상태가 미흡하여 가맹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합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가맹점 개점이 연기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부가세포함)	비고
최초교육	3일	3,300천원 (2인까지)	최초계약 시 필수 이수, 교육시간은 가맹점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수시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 시 실시
보수교육		협의 후 결정	
특별교육		협의 후 결정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 가맹점 종업원 등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종업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2인 초과 시 교육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행신역본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20, 1층 105호(행신동, M-타워)

* 위 직영점은 2024 년 12 월 가맹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9개월	2023.03.15 개점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384,17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임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함)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1670-0007)**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별첨 1] 필수품목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첨 2] 메뉴 및 판매가

메뉴명칭	판매가격 (원)
닭살국수	8,900 / 10,900
얼큰닭살국수	9,400 / 11,400
소고기살국수	8,900 / 10,900
얼큰소고기살국수	9,400 / 11,400
얼큰새우살국수	9,500 / 11,500
월남왕쌈	8,500 / 10,500
직화돼지덮밥	9,500 / 11,500
직화돼지반미	8,900 / 10,900
분짜	14,900 / 16,900

※ 가맹본부는 위 메뉴에 대한 변동사항(신메뉴 추가, 변경, 삭제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본사직원 방문설명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메뉴 리스트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해당 메뉴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서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포머이쌀국수]의 정보공개서및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수령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수령장소 :

*** 가맹본부 : (주)머이코리아 최 호 근, 이 혜 진 (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서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포머이쌀국수]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수령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수령장소 :

*** 가맹본부 :: (주)머이코리아 최 호 근, 이 혜 진 (인)**

[별지 4]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

연번	지역	점포명	전화번호	소재지
1	경기	행신역점	031-962-5992	경기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20, 1층 105호(행신동, M-타워)

[별지 5]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는 2024 년에 설립되어 해당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